

대한석탄공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2014.10.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반부패·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협력회사(공사와 계약거래를 하는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 “협력회사“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자세) ① 협력회사는 공사의 반부패 청렴관련 제반규정 및 윤리행동강령 등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 임직원이 공사와 업무협의를 하기 위하여 공사 임직원과 대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 CEO와 상임감사의 청렴서신 등을 통해 전파하는 공사의 제반 청렴정책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청렴계약 준수 의무)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공사의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한 청렴계약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적 기준

제4조(금품·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회사 임직원은 공사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알선·청탁의 금지) 협력회사 임직원은 공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회사 임직원은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와의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회사 임직원은 공사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상호협력 증진) ① 협력회사와 공사는 거래 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와 공사는 윤리경영 강화 등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적 기준

제9조(접대비 한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접대는 1인당 3만 원 한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사 임직원에게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5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회사 임직원은 공사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사 퇴직자의 협력회사 취업 제한 등) ① 협력회사는 공사의 퇴직 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에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협력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협력회사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주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환경보호) 협력회사 임직원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4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회사는 청렴한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강령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사이트(www.acrc.go.kr) 또는 공사 홈페이지내 청렴신문고(www.kocoal.or.kr) 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 시의 조치) ① 협력업체가 공사의 제반 청렴계약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공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3조와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경쟁입찰에서 특정인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는 2년
나.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는 1년
다.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제공으로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2년
라.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는 1년
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4조와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5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 조치
3. 기타 공사 청렴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한 조치 등

부 칙

① (제정) 이 강령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